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 통 보

제 목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소홀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처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자연 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하고,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2조 제4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납부기한(10일 이내)을 붙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부합동감사 기간(2018. 2. 26.~3. 16.) 중 확인한 결과, [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 현황”과 같이 총 2건에 5,255,960원의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고 체납된 상태로 있다.

[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 현황(2017.12월 기준)

(단위 : 원)

시군구	체납자	농지소재지	부과일자	부과금액	체납금액	조치내역
합계	2건			5,255,960	5,255,960	
울주군	○○○	○○읍 ○○리 00-0	2015.06.24	4,526,000	4,526,000	해당토지 압류 (2015.12.29)
	○○○	○○읍 ○○리 000	2015.06.24	729,960	729,960	해당토지 압류 (2015.12.29)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시정]**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 5,255,960원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한국○○○○공사 압류재산 공매 대행, 조건부 무재산 결손처리, 관련부서 업무협조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시·군의 재정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